

# 안전하고 수용하는 학교 만들기: 수용하는 학교 법 (Accepting Schools Act, 법안 13)에 관한 학부모를 위한 정보

안전하고, 포용하며, 수용하는 학교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와 웰빙에 필수적입니다.

이에 따라 정부는 법안 13, **수용하는 학교 법**을 상정했으며 현재 법으로 통과되었습니다.

## 법안 13이란 무엇입니까?

법안 13은 교육위원회가 학교 안에서 학생들간의 부적절하고 무례한 행동을 예방하고 다루도록 요구합니다. 여기에는 **Bullying**(약자 괴롭히기), 차별 그리고 괴롭힘 등의 행동이 포함됩니다. 새로운 법은 이들 행동들이 학교에서 용납되지 않음을 분명히 명시합니다. 이 법은 모든 학생들이 인종, 성별, 성적 취향, 장애 여부 또는 모든 다른 요인에 관계없이 존중과 이해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.

## 법안 13이 학교와 교육위원회가 Bullying(약자 괴롭히기) 등을 비롯하여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어떻게 예방하고 다루도록 돕습니까?

이 법은 교육위원회와 학교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노력을 바탕으로 합니다. 법안 13은 교육위원회에 다음을 요구합니다.

- 점증적 규율, Bullying(약자 괴롭히기) 예방 및 개입 그리고 공평하고 포용하는 교육에 대한 방침을 시행한다.
- 다른 학생들을 괴롭히는 학생들에게 더 엄격한 처벌을 고려한다. 처벌은 정학과 다음의 경우 퇴학을 고려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.
- 해당 학생이 이미 Bullying(약자 괴롭히기)으로 정학을 받았고 학교에 등교하는 것이 다른 학생들의 안전에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을 만드는 경우, 또는
  - Bullying(약자 괴롭히기)의 동기가 편견, 적대감 또는 증오에 의한 경우.
  - 교육법은 정학과 퇴학을 받은 학생들을 위한 지원을 이미 요구하고 있습니다.
  - 학생이 퇴학을 받았거나 장기 정학(수업일 5일을 초과하는 경우)을 받은 경우, **정학/퇴학 프로그램**을 통해 학습/비 학습 지원을 제공 받는다. 수업일 최대 5일까지 정학을 받은 학생은 숙제 패키지를 받는다

- Bullying(약자 괴롭히기)을 예방하고 호의적인 학교 환경을 촉진하기 위해 매년 교사들과 기타 학교 직원들을 교육하고 정보를 제공한다.
- 학교의 다년 계획에 호의적인 학교 환경과 Bullying(약자 괴롭히기) 예방에 관한 목표를 포함시키고 대중에게 이 계획을 공개한다.

## 법안 13은 학교장의 역할을 변경합니까?

- 법안은 학교장에게 새로운 구체적인 책임을 부여한다. 이제 학교장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실행해야 한다.
  - Bullying(약자 괴롭히기)을 포함하여 학생이 정학이나 퇴학에 이를 수 있는, 교육위원회 직원들이 보고하는 모든 사고를 조사한다.
  - 학생의 행동으로 정학이나 퇴학에 이를 수 있을 때, 다른 학생에게 피해를 준 학생의 부모/보호자에게 관련 사고에 대해 통보한다. 또한, 학부모를 초청하여 자녀들에게 제공할 지원에 대해 논의한다.
  - 사고에서 피해를 입은 학생의 부모/보호자를 초청하여 그들의 자녀들에게 제공할 지원을 논의한다. 학교장은 이들 부모들에게 통보하도록 이미 요구되어 있다.
  - 학생이 정학이나 퇴학에 이를 수 있는 사고를 보고한 교사와, 필요 시, 다른 교육위원회 직원들과 연락한다. 학교장은 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에 관해 그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.

## 법안 13은 어떻게 교육위원회와 학교를 지원하여 학부모, 학생 및 기타 직원과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도록 합니까?

본 법안은 학부모들이 그들의 자녀들이 학교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지원과 더 호의적인 학교 환경을 만들려는 학교의 노력에 관해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.

교육위원회는 다음을 실행해야 합니다.

- 학부모들이 자녀들이 받고 있는 지원에 관해 우려사항을 가지고 있는 경우 학부모들이 따라야 할 절차를 확립한다.
- 학생, 학부모 및 다른 이들이 안전하게 Bullying(약자 괴롭히기) 사고를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개발한다.

- 직원, 학생 그리고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최소한 2년에 한번 학교 환경 설문조사를 실시한다.
- 학부모들에게 학생의 안전과 학교 환경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들 더 많이 제공한다.

### 법안 13은 학생들을 어떻게 지원합니까?

법안 13은 다음을 요구합니다.

- 학교는 부적절한 행동에 참여하거나 부적절한 행동으로 피해를 받은 학생들을 지원한다.
- 학교는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그리고 사고를 증언한 학생들에게 프로그램, 중재 또는 기타 지원을 제공한다.
- 학생들이 안전하게 Bullying(약자 괴롭히기) 사고를 보고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.
- 교육위원회와 학교는 모든 학생들의 인식과 이해를 제고하도록 학생들이 다음과 같은 주제에 대해 학교에서 그룹을 형성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.
  - 인종차별 금지
  - 장애인
  - 남녀 평등
  - 성적 성향 및 성적 정체성 이러한 그룹에는 동성애자-이성애자 연합(Gay-Straight Alliances, GSA)이 포함될 수 있다.

교육위원회와 학교장은 학생들이 GSA 명칭 또는 학생들이 이들 그룹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다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습니다.

학생들은 자신들의 학교의 필요에 따라 다른 유형의 그룹을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.

- 학생 주도 그룹의 명칭은 모든 학생들을 포용하고 수용하는 호의적인 학교 환경의 촉진을 도울 수 있어야 한다.

### 법안 13은 공립학교로부터 공간을 임대하는 조직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?

- 법안 13은, 스포츠 리그 및 커뮤니티 그룹과 같은, 제3자도 그들이 공립학교의 공간을 사용할 때 주 행동규범(Provincial Code of Conduct)에 따른 행동 표준을 준수할 것을 요구합니다. 해당 규범은 학교 커뮤니티의 모든 회원들을 존경과 존엄을 가지고 대우하도록 하며 수년간 시행되고 있습니다.

### “전교적 접근”은 학교를 더 나은 학습의 장으로 만드는 데 있어 어떻게 기여합니까?

호의적이고 포용하는 학교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“전교적 접근”이 필요합니다. 이러한 접근은 전교와 커뮤니티 전체의 건강하고 존중하는 관계를 기반으로 합니다.

안전하고, 포용하며, 수용하는 학교는 학생들을 교실과 그 바깥에서도 최선을 다하도록 지원합니다. 정부, 교육위원회, 학교 직원, 학부모, 학생 및 커뮤니티 회원들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은 안전하고, 포용하며, 수용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.

우리 모두 함께 모든 학생들이 학습하고, 성장하며, 번영하도록 돕는 우호적인 학교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.

### 법안 13은 종합 대처 방안의 일부입니다

본 법안은 평등 및 포용하는 교육 및 안전한 학교 전략(Equity and Inclusive Education and Safe Schools Strategies)을 바탕으로 합니다. 법은 다음을 포함하는 더 큰 대처 방안의 일부입니다.

- 학교에 더 많은 정신건강 담당자들을 채용하고, 농촌 지역 및 외진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들을 위한 정신과 의사와 비디오 카운셀링 서비스 확대.
- 온타리오 주 교육과정 협의회(Ontario Curriculum Council)의 권고를 바탕으로 교육과정 전체에 더욱 공평하고 포용하는 교육 원칙과 Bullying(약자 괴롭히기) 예방 전략을 포함시키는 방안 찾기.
- 모든 온타리오 주 주민들이 Bullying(약자 괴롭히기) 예방에서 역할을 맡고 있음을 강조하는 공공 의식 캠페인을 실시.
- 수용하는 학교 전문가 패널(Accepting Schools Expert Panel)을 만들어 Bullying(약자 괴롭히기) 예방 및 중재를 포함하는 전교적 접근에 중점을 두는 자원과 관행에 대해 조언을 제공.

### 추가 질문이 있으십니까?

학부모들은 온라인으로 다음에 관한 추가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.

- 온타리오 주의 수용하는 학교를 위한 대처 방안 (Action Plan for Accepting Schools)  
[www.ontario.ca/acceptingschools](http://www.ontario.ca/acceptingschools)
- 온타리오 주의 안전한 학교 전략(Safe Schools Strategy)  
[www.edu.gov.on.ca/eng/parents/safekit.html](http://www.edu.gov.on.ca/eng/parents/safekit.html)
- 온타리오 주의 평등하고 포용하는 학교 전략 (Equity and Inclusive Education Strategy)  
[www.edu.gov.on.ca/eng/policyfunding/equity.html](http://www.edu.gov.on.ca/eng/policyfunding/equity.html)
- 온타리오 주 행동 규범(Provincial Code of Conduct)  
[www.edu.gov.on.ca/eng/safeschools/standards.html](http://www.edu.gov.on.ca/eng/safeschools/standards.html)